

#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38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 . 5. 8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 바뀐 조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재산세 “과세특례” 를 재산세 “도시지역분” 으로 용어 변경(안 제15조,제16조)
  - 재산세 “과세특례”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변경함
-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징수 기준금액을 “5만원 이하” 에서 “10만원 이하” 로 변경함(안 제17조)
  - 세목 통폐합으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인 5만원 이하에 재산세 도시지역 분(중전의 도시계획세)이 포함되어 제도의 취지 퇴색

## 개정조례안 : 불임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- 「지방세법」 제110조
- 「지방세법」 제112조 제1항, 제3항 ( ' 13.1.1.일부개정, 법률 제11617호)
- 「지방세법」 제115조 제1항제3호 ( ' 13.1.1.일부개정, 법률 제11617호)
- 「지방세법」 (법률 제10416호, 2010.12.27, 일부개정)일부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

## 사전예고결과 : 불임(의견없음)

- 입법예고 : 2013. 04. 04. ~ 2013. 04. 24.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- 현행조례(전문)

##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시장” 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가목 중 “시내” 를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” 로 하고, 같은조제1호나목 중 “시내” 를 “시” 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관할 시장” 을 “시장” 으로 하고, “「경기도 도세 조례」를 “「경기도 도세 조례」(이하 “도 조례” 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및 2항 중 “관할 시장” 을 “시장” 으로 한다.

제15조 제목 중 “과세특례” 를 “도시지역분” 으로 하고, 같은조의 본문 중 “의회” 를 “안산시의회” 로 한다.

제16조 제목 중 “과세특례” 를 “도시지역분” 으로 하고, 같은조의 본문 중 “과세특례” 를 “도시지역분” 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5만원” 을 “10만원” 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및 2항 중 “관할 시장” 을 “시장” 으로 하고, “「경기도 도세 조례」” 를 “도 조례” 한다.

제19조 중 “해당하는 때” 를 “해당하는 경우” 로 하고, “관할 시장” 을 “시장” 으로 하고, “「경기도 도세 조례」” 를 “도 조례” 로 한다.

제20조 중 “관할 시장” 을 “시장” 으로 하고, “「경기도 도세 조례」” 를 “도 조례” 로 한다.

제22조 중 “관할 시장” 을 “시장” 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세 정 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세정과장 서 근 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정담당 양 태 호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정 윤 주 (행정 2198)



<p>제12조(신고의무)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, 급여총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<u>관할 시장</u>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<u>관할 시장</u>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~4 (생략)</p>	<p>제12조(신고의무) ① ----- ----- -----<u>시장</u>----- ----- ② ----- -----<u>시장</u>----- ----- 1~4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)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<u>의회</u>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5조(<u>도시지역분</u> 대상지역의 고시) ① ----- ----- -----<u>안산시의회</u>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과세특례)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<u>과세특례</u>의 세율은 1천분의 1.4로 한다.</p>	<p>제16조(<u>도시지역분</u>) ----- -----<u>도시지역분</u>----- -----</p>
<p>제17조(납기)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 <u>5만원</u>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납기) ----- ----- -----<u>10만원</u>----- ----- -----</p>
<p>제18조(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)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, 소재지, 지번, 구조, 용도, 층수,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<u>관할 시장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「경기도 도세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~7 (생략)</p>	<p>제18조(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시장</u>----- -----<u>도 조례</u>----- ----- 1~7 (현행과 같음)</p>

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는 설치연월일, 종류,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「경기도 도세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시장 -----  
----- 도 조례 -----  
-----

제19조(선박에 관한 신고의무)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, 명칭, 건조연월일, 기관번호, 정계장, 용도, 톤수, 취득가격, 과세사실 발생연월일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「경기도 도세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9조(선박에 관한 신고의무) -----  
----- 해당하는 경우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시장 ----- 도 조례 -----  
-----

1~5(생략)

1~5(현행과 같음)

제20조(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)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, 명칭, 제조연월일, 형식, 용도, 이륙중량, 적재능력, 취득가격,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「경기도 도세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0조(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시장 -----  
----- 도 조례 -----  
-----

1~5 (생략)

1~5 (현행과 같음)

<p>제22조(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) 법 제 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<u>관할 시장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.</p> <p>1~7 (생략)</p>	<p>제22조(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시장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~7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